

1. 개정이유

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절차 및 비용을 완화하여 인증 편의성을 제고하고 물류 환경 변화 반영 및 국제물류주선분야 등에 대한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복수의 인증분야에 대해 인증을 받은 우수물류기업의 경우 동일 연도에 모든 정기 점검을 통합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정기 점검 시기 변경 허용 (안 제6조)
- 나. 기업규모, 복수 인증 신청 등에 따른 인증수수료 일부 감면(안 제10조)
- 다. 물류창고기업의 재난 안전정보 관리 관련 기준 신설(별표 제2호)
- 라. 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한 우수물류기업 인증기준 중 과도한 정량적 인증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(별표 제3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국토교통부와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인증분야에서 인증을 받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여러 인증분야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합하여 실시하는 정기 점검의 실시 시기는 여러 인증분야 가운데 가장 먼저 도래하는 점검 시기에 따른다.

⑤ 심사대행기관은 인증기업별 점검 시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제4항에 따라 점검 시기가 변경된 당해 정기 검사의 실시 시기를 앞당기거나 지연할 수 있다.

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과 제2항”을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”로 한다.

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50%를 심사 종료 후에 환급한다.

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의 신청을 한 경우

2. 같은 연도에 복수로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의 신청을 한 경우

별표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재난 안전정보 관리 및 화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화재보험 가입 등 화재예방 및 화재대응 매뉴얼을 갖출 것

다. 화주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서비스 경쟁력을 갖출 것

라. 글로벌 물류수요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제화 업무역량을 갖출 것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우수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및 정기 점검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6조제4항·제5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우수물류기업 인증 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3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점검 시기 등) ① ~ ③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6조(점검 시기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인증분야에서 인증을 받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여러 인증분야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합하여 실시하는 정기 점검의 실시 시기는 여러 인증분야 가운데 가장 먼저 도래하는 점검 시기에 따른다.</u> <u>⑤ 심사대행기관은 인증기업별 점검 시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제4항에 따라 점검 시기가 변경된 당해 정기 검사의 실시 시기를 앞당기거나 지연할 수 있다.</u>
제10조(수수료) ①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0조(수수료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50%를 심사 종료 후에 환급한다.</u> <u>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</u>

② (생 략)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.	<u>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의 신청을 한 경우</u> <u>2. 같은 연도에 복수로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의 신청을 한 경우</u>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-